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훈령 제453호

사천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사천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읍·면·동”을 “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녹취시 사전고지) 사용자가 녹취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통화
상대자에게 녹취된다는 사실을 알린 후 녹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1년간 저장하고 1년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다만, 녹취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준하며 사용부서의
당사자에게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훈령 제454호

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사천시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종사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 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준수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8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9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이나 이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마련,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지휘·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9.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0.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지도
11.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2.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법이나 이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6.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보건의를 둔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 내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시장

나. 위원: 재난안전과장, 도로과장, 녹지공원과장, 환경사업소장,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 위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6명 이내의 근로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시장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15조에서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④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의 작업중지 명령권 등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지) ①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의결 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해야 한다.

제1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명예 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명예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 ①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2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1. 사무직 종사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2. 현업 상시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나목과 같다.

제23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 상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시에는 작업 투입 전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현업 상시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5조(특별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업 상시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1. 일용노동자 : 2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다.
-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책임자에 선임 시) :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24시간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기록·보존)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교육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전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한 사업장 또는 위험한 시설·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항상 안전보건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31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방호조치 등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와 합격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24조 및 제126조에 따른다.

제33조(안전인증)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안전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사업장의 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7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수칙)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4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따라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④ 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투입 전에 제3항 3호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⑥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제41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정한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제43조(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영, 규칙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44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의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2호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중, 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5조(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47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법 제41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8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고조사 업무 담당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49조(휴게시설 설치·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들이 신체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식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기준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5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시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5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하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4조(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보고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근로자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따라 사고조사를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⑦ 안전관리자(직업병: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제5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해야 한다.

제56조(재해분석 및 대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57조(기록·관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9장 위험성평가

제58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 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 시기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0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원회 근로자위원,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6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② 제1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2조(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3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59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0장 보칙

제64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6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제6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고시 제2023-217호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278호(2021.9.30.)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3-143호(2023.6.29.)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3. 사업비 : 5,797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5,797	
기초생활기반확충			3,169	
	오동지교류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내 2층, 3층 - 연면적 : 1,621.26㎡ (행정복지센터: 886.71㎡, 오동지교류센터: 734.55㎡)	1,855	
	오동지교류센터(별관)	연면적 : 209.45㎡	1,006	
	마을회관 조성	연면적 : 88.11㎡	308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지역경관개선			1,456	
	중심가로 환경정비	운동기구 철거 및 설치 1식	9	
	송지천 수변산책로 조성	건강마당 A=664.6㎡	529	
	얼쭈한마당	쉼터 및 광장 조성 A=786㎡	918	
지역역량강화			547	
	지역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권역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547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25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5년 6개월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고시 제2023-21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내용

지역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 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망산공원	경남 사천시 선구동 216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역	D	7,747	급경사지의 토사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사천시장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붙임 지정 지형도면 참고)

3.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 사면 L=150m, H=10~30m

지역명	사업 시기	사업예산(백만 원)	사업 내용	비고
망산공원	2024년 이후	8,690	사면 정비 및 배수로 설치 등 L=150m, H=10~30m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사업 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 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6.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3.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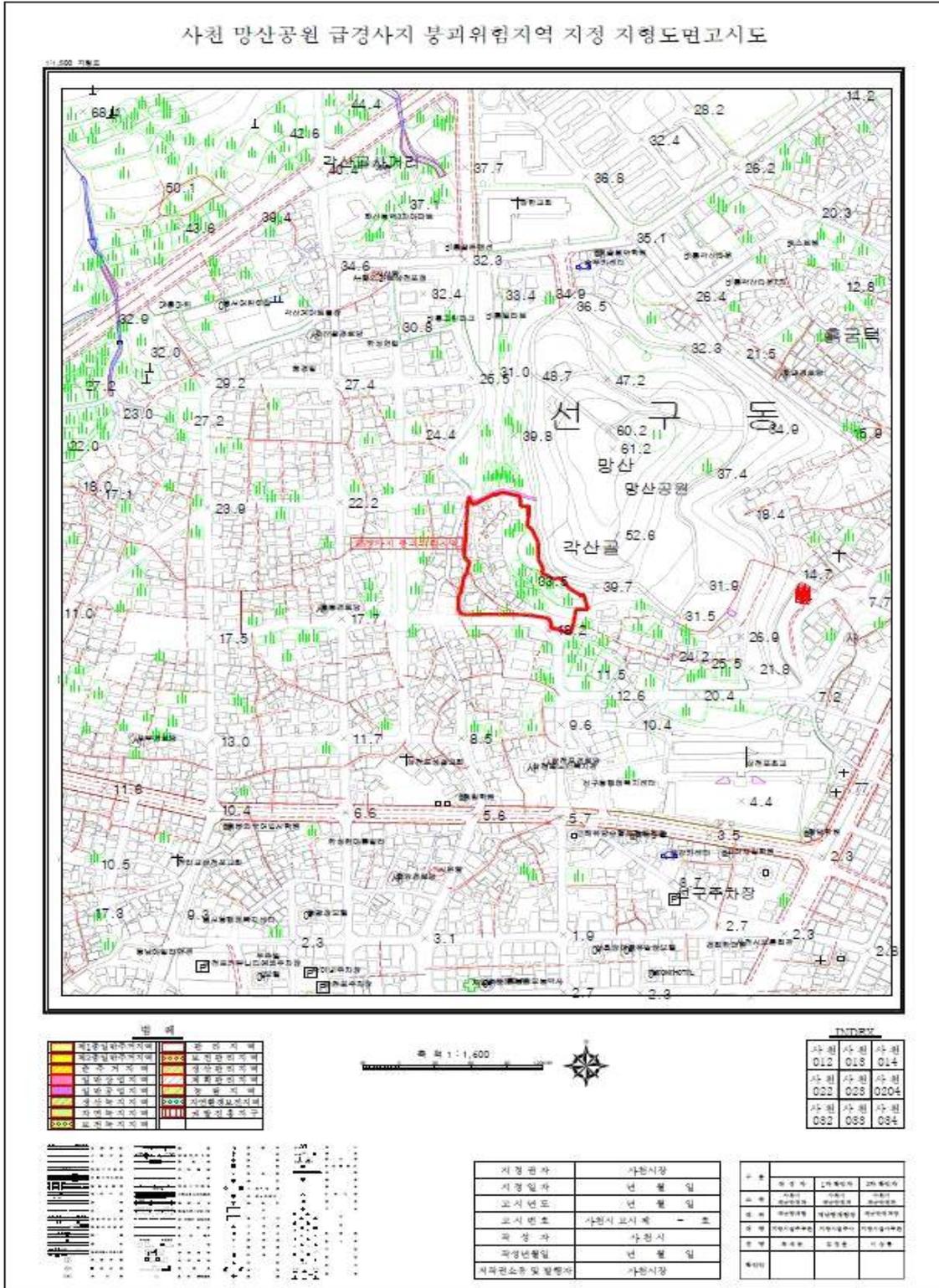
7.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5)

-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

사천 시 공 보

제853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 토지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사천시 선구동	221-2	전	319	319	사천시 선구동 212-*	김*순 외 5인
2	“	214	대	71	71	사천시 죽림동 576 신우심포니타운 102-31*	노*희
3	“	213-2	묘	150	150	사천시 동동*길 30	최*희
4	“	191-15	대	73	73	사천시 선구동 191-1*	하*선
5	“	217-1	대	698	698	동리	강*수
6	“	218	대	89	89	사천시 동림동 85 삼보아파트 30*	최*권
7	“	217-2	대	96	96	남해군 남면 두양로52번길 1*-8	손*요
8	“	215	대	126	126	사천시 선구동 21*	이*조외 1인
9	“	216	전	565	565	사천시 선구동 21*	강*선외 1인
10	“	208	전	668	668	사천시 가마등1길 3*, 가동 307호(선구동 신라맨션)	김*재
11	“	192	대	344	344	사천시 벌리동 133-* 로얄맨션 가-203	임*준
12	“	193-1	대	166	166	사천시 동림동 8* 삼보아파트 304	최*권
13	“	194	대	317	317	사천시 주공로 7*, 105동 804호	김*연
14	“	196	전	1,046	1,046	진주시 강남로 10*, 501호	정*갑
15	“	193	대	303	303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 다세대주택 402호	김*곤외 1인
16	“	162-2	대	132	132	사천시 선구*길 46(선구동)	주*생
17	“	195-2	대	60	60	광명시 디지털로 6*, 101동 2203호	주*순
18	“	195	대	294	294	진주시 강남로 10*, 501호	정*갑
19	“	191-1	답	132	132	서울 광진구 능동 37*	김*순
20	“	191-21	대	112	1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20 대신빌라 301호	김*
21	“	191-24	대	324	324	사천시 문선1길 8*, 101동 603호	김*엽
22	“	191-6	대	96	96	사천시 주공1길 5*, 201동 1106호	정*경
소계				6,181	6,181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3	사천시 선구동	219	대	208	208		사천시
24	“	212-2	전	83	83		“
25	“	162-4	대	40	40		“
26	“	162-10	도	69	27		“
27	“	162-5	대	247	211		“
28	“	162-7	대	68	68		“
29	“	162-1	대	15	15		“
30	“	162-9	도	150	150		“
31	“	195-1	도	82	82		“
32	“	198-6	도	126	126		“
33	“	198-5	도	9	9		“
34	“	198-4	전	270	270		“
35	“	161-4	전	298	100		“
36	“	191-20	답	182	28		국토교통부
37	“	191-12	대	88	88		사천시
38	“	191-4	대	34	34		“
39	“	162-10	도	69	27		“
	소계			2,038	1,566		
	합계			8,219	7,747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고시 제2023-2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9. 14.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19 (2023.9.7.)	비토 쓱사꺼(갯벌) 생태체험시설 탐방로 설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9-4, 205-9번지선	630 (직접)	2023.09.07.~ 2038.09.0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30호

「사천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농공단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존속기한 연장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전화번호: 055)831-3447, 팩스번호: 055)831-6045]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한 연장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14. ~ 2023. 10. 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존속기한) ----- -----<u>2028년</u>----- ----- ----- ----- -----.</p>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3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9. 14.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 9. 14. ~ 2023. 9. 29.(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92보9278	포터 II (PORTER II)	강경수	2023. 9. 6.	지인이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보험에 들고 차량을 운행해 정지를 신청함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41호

용당(항공MRO)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공고

- * 입찰신청자격: 공급 공고일 기준 주소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자(개인, 법인)
- * 금회 공급하는 용당(항공MRO)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명의변경)가 제한되오니 본 공고문 내 '11. 명의변경'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오니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 신중히 검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 공급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 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공급예정 가격(원)	입찰보증금	대금납부조건
단독주택 (점포겸용)	14필지	334 ~ 523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192,217,000~ 320,927,500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급토지 세부내역 등은 공급 공고 첨부파일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은 본인 입찰예정가격의(공급예정가격이 아님에 유의) 5% 이상이며,** 입찰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 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2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일반실수요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 1인당 신청 가능 필지 수 제한 없음 [단, 동일인(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중복신청 불가]
- ※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 ※ 인허가 문제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는 불가하므로 입찰보증금 입금 전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를 포함한 관련 규제사항 및 본 공고문의 기타 유의사항 확인 및 관계기관 문의 등을 거친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방법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	결과게시	계약체결
제한경쟁 입찰	2023. 9. 14.(목) ~ 10. 20.(금) 09:00~17:00	2023. 10. 23.(월) 10:00	2023. 10. 25.(수) 10:00	2023. 10. 30.(월) ~ 10. 31.(화) 10:00~17:00 (12:00 ~ 13:00 제외)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 ※ 상기 입찰 신청은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 개찰 결과는 온비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안내사항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는 인터넷을 이용, 토지의 입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개찰 결과는 온비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라.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는 사천시 홈페이지 공급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 인터넷 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1588-5321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공통사항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고(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온비드의 인터넷 신청은 종료 시각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 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 라.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 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마.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필지 분할 불가)
- 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사. 입찰 신청인과 계약체결인 명의는 같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아. 공동신청인(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 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상 불가], **동일인(법인 포함)이 동일 필지에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경우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 법인의 대표(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중복신청 등 무효 처리 시 입찰보증금이 우리시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급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 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 토지의 장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입찰 신청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 신청절차

【 온비드(<http://www.onbid.co.kr>) 입찰 신청절차 】

1) 단독신청의 경우

온비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신청토지 선택 ➡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입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2) 공동신청의 경우

온비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 공고문 및 관련사항 등 확인 ➡ 이하 “단독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 입찰 신청 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 납부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 마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종료 시각에 정확히 시스템이 중지되며 입찰보증금이 납부 마감 시간 이후에 입금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하면 입찰하고자 하는 필지 수만큼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납부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되거나 납부 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급예정가격 미만의 입찰가격은 무효 처리되오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 건별 접수증에 기재된 납부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 기한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 입금, 납부 마감 시간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되었을 때 납부 기한 내에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며 납부 기한 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의(공급예정가격이 아님에 유의) 5% 이상이며**, 입찰 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 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공급예정가격이 291,798,000원, 입찰예정가격이 300,000,000원 경우 → 입찰 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300,000,000원)의 5%인 15,000,0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마. 1인(법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각 건별로 납부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분할 입금된 금액으로 각 필지에 입찰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분할이나 입금 취소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입금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보증금은 과오 납부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개찰 이후 당첨/ 낙찰 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신청접수 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 (공동 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개찰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다. 반환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급 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고 개찰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의 반환 기간 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시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체결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간 내 미계약 시 입찰보증금은 일체의 예외 없이 우리 시로 귀속 처리되오니 반드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나. 신청 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8 구비서류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위임 시 위임장 1부,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추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1부 및 사용인감 - 위임 시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추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계 약 금 납부계좌	<p>농 협 839-01-012561, 예 금 주: 사천시 징수관</p> <p>※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p>

※ 모든 서류는 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며, 공동신청자는 공동신청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가.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10%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됩니다.

나. 계약체결 기간까지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일은 토지공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기간의 마지막 날로 일괄 지정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9 대금납부 방법

■ 대금납부조건: 일시납부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납부비율	토지 대금의 10%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 대금의 90%
납부기한	<u>계약체결 시</u>	<u>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u>

가. 대금납부(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납부 기한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좌 입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금(잔금)이 납부 기한까지 미완납 된 경우에는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시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 가능 시기: 2023. 11. 15일 이후 가능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상기와 같으나, 토지 대금 완납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당초 통보한 토지사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면적정산

가. 향후 부득이하게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적정산 및 가격정산 등으로 매수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시 토지 대금이 미완납 된 경우에는 미납 대금(잔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합니다.

■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은 토지 대금이 완납된 후에 가능하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11 명의변경

- 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명의변경 시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12 주요세금 등 신고사항

- 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우리시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토지의 **최종 토지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토지대금 완납일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 내용만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며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간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최초 계약체결 시 대상 용지의 거래에 대한 신고는 우리시에서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명의변경(매매 원인)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13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전 공급공고문, 매매계약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내용(변경 포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나. 건축 시에는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다.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라. 매수인은 해당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 이주단지 내외 입지 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해당 토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 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마.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토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경사 정도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바.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 기관에 인입 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해당 구간 관리주체인 우리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사. 관계 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 이주단지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자. 가로등, 공원, 필지 주변 보도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성 관련 사항

가.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의 행정절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사 관련 도면, 건축 규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반 시설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용당(항공MRO)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에 기재된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허용 용도 외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및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 -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4층 • 최저높이: -

다.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는 지중화 사업 해당되지 않아 전주, 전선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건축공사를 위한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 시 시설물 관리기관 및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반 시설(우수, 오수, 상수 등 지하 매설물 포함)은 이주단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연결공사 시 우리시에 입회를 요청하고 연결 후 필요시 기반 시설 복구 확인(지하 매설물 CCTV 촬영제출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 마. 해당 토지(공통)는 성토 구간(발파암 되메우기)과 절토구간(계획고 하부 암반 존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굴착 시 암반이 노출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굴착으로 인해 노출되는 암반 등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바. 해당 토지 일부 구간 보강토옹벽을 설치함에 따라 지반 보강재가 존재하므로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타 기관 시행 시설은 기관(업체)별로 공급계획, 공급 일정 및 인입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아. 매수인은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 등을 확인 후 신청에 응해야 하고, 필지 주변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지 요구 등을 우리 시에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자. 공공시설물 점·사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차. 일부 필지 전면에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시설물, 소화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관련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토지 주변 환경 및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시설물 등), 지상 노출물(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소화전, 및 표지판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부,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은 행위원인자 부담으로 시설물 관리 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카. 해당 토지 전면에 기반 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축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기반 시설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기공급 관련 시설, 공공 시설물, 기반 시설(지장물 포함)의 변경 요구 및 관련 비용 등을 우리 시에 청구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매수인 비용 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해야 합니다.
- 파. 건축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해당 토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우기시 해당 토지 내 토사가 토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 유출 방지 측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 하. 해당 토지 주변의 도로 등에 매설된 지하 매설물이 건축공사 터파기(주변 침하 등)로 인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 대책 등을 수립하여 터파기 등 시공하여야 합니다.
- 가. 해당 토지 공사로 인한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 적치, 차량주차 등은 해당 토지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 나. 해당 토지 매수 이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다. 대지조성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각종 도면(공사계획평면도) 등은 우리 시 투자유치산단과에 방문 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055)831-346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2023. 9. 14.



사 천 시
[투자유치산단과]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42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구 지방도	노선명	100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0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68-1 (60m 구간)
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2023년 12월 31일(일)		

이유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사업(암거BOX)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그 밖의 사항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740번지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4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나.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과 우리 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②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 별표7)
- 나.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안 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최대 100억원
-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 한도액 조정(안 제19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 까지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 1) 주 소 : (52539)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 2) 전 화 : 055-831-3059 (FAX : 055-831-6045)
 - 3) E- mail : ezday@korea.kr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 하고 그 지원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14. ~ 2023. 10. 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비 용자지원을 받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 200
억원-----.

②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3, 2021.9.30.>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개정 2019.1.3.>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9.1.3.>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3.>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신설 2019.1.3.>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9.30.>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판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7.>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본조신설 2023.3.30.]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 삭제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율,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 삭제

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8.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
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③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3. 지식서비스산업

②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2. 건설업
3. 소비성서비스업
4.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5.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 뉴스 제공업
7.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 ④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⑦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및 고용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을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100억원

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 지원 가능토록 하고 별도기준 마련

- 고용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가능에 대한 범위 설정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한도액 조정(안 제19조)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14. ~ 2023. 10. 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로,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 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8]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 10억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보조금) ① -----

----- 10퍼센트 -----
30억원-----.
----- 착공신고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전보조금) ① -----

----- 10퍼센트 ----- 10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 의3과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신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
의 10퍼센트 -----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
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
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
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
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
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용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 ⑤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100억원-----
-----.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개정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 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 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9.30., 2023.3.3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

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 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용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53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023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 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주민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23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14. ~ 2023. 10. 4.(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의2(존속기한) ----- ----- <u>2028년</u>----- -. ----- ----- ----- -----.</p> <p>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55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변경)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변경)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구 지방도	노선명	100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당초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5-2 ~ 338-1
			변경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202-5 ~ 202-2
기간	당초	2023년 8월 28일(월) ~ 해제시 까지		
	변경	2023년 9월 14일(목) ~ 2024년 6월 30일(일)		

이유

지방도 도로공사 사업(터널시공)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실질적인 터널공사구간만 제한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그 밖의 사항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57-5번지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당초)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65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시장·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84,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우리 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통합관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 14 . ~ 2023. 10 . 4.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민의 경제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조성 및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주민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다.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3호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8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조직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